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약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6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피고로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-〇〇 소재 원고 소유인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〇〇㎡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 60,000,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같은 해 〇〇. ○.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 6.000.000원의

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 참조).

- 2.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기일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15일수 때에기간을 주었음에도(갑 제2호증 참조) 역시 위 건축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, 원고는 다른 건축자재상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건축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.
- 3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약금 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유예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, 원고는 위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건축자재공급약정서1. 갑 제2호증통고서(내용증명우편)1. 갑 제3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

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생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이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